

한국게임학회 학회장 선거관리규정

제 1조 (목적)

본 규정은 한국게임학회 정관 제 12조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장선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선거관리위원회)

회장의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회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임하고, 선거관리위원장은 총무이사를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.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선거 관리 업무를 집행한다.

- ① 투표 일정 및 절차 공고
- ② 입후보 등록 및 공지
- ③ 투·개표 관리
- ④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

제 3조 (선거권자)

선거일로부터 60일 이전의 휴면회원(3년간 학회 활동이 없는 종신회원)을 제외한 종신회원, 정회원으로 한다.

- ① 정회원은 60일 이전에 회원 자격이 있으면서 선거일까지 회원 자격이 만료되지 않아야 한다(정회원 자격은 회비납부일로 1년까지 유효).
- ② 선거일로부터 1년 이내 학회 활동(논문 투고, 학술발표대회 및 학회워크숍 참가) 이력이 있는 비회원(회원자격이 만료된 지난 회원 포함)은 선거일로부터 60일 이전에 회비를 납부하여 입회/재입회하여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.
- ③ 선거인명부 이의신청기간 내 이의를 신청한 휴면회원은 본 회 활동을 개재한 것으로 간주하여 다시 종신회원으로 분류되어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.
- ④ 선거인명부 이의신청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, 차후 선거권이 있는 회원으로 판명될 경우라도 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.

제 4조 (피선거권자)

휴면회원을 제외한 종신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종신회원으로 한다(피선거권자를 추천하는 자는 휴면회원을 제외한 종신회원으로 선거일로부터 60일 전에 종신회원이어야 한다).

제 5조 (입후보자 등록)

회장 입후보자는 회장 선거 30일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.

제 6조 (회장선거 및 입후보자 공고)

- ① 회장선거는 선거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학회원에게 회원 이메일이나 SNS로 공고한다.
-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회장 후보자의 약력, 소견 등을 본 학회의 뉴스레터 및 학회

지, 별도의 문서를 통하여 공고한다.

제 7조 (회장선출)

- ① 회장은 상기 제4조의 회장 입후보자로 등록된 후보 중 1인을 선출한다.
- ② 회장은 회장 선거를 실시하는 해의 추계 정기총회에서 선거권자의 직접투표와 선거권자 명의의 문자, SNS(카카오톡 등), 메일을 이용한 간접투표를 통해 선출되며 아래의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.
 - 회장은 투표 참여자의 과반수 최다득표자로 선출한다.
 - 과반수 득표자가 없거나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다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기존 투표 방식과 동일하게 재투표를 진행하여 이들 중 최다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(직접투표 외의 투표는 선거일로부터 휴일을 제외한 3일 자정까지 수렴).
- ③ 투표 참여자는 총회에 참석하여 직접 참여하는 자, 선거권자 명의의 문자, SNS(카카오톡 등), 메일을 이용하여 투표하는 자로 한다.
- ④ 시간절약을 위하여 선관위에서 투표당일 현장상황이나 선거투표 준비상황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투표방식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투표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.

부칙

1. 이 규정은 2006년도부터 시행한다.
2. 3대회장 선출은 이사회에 위임하고, 학회장 선출 규정 제 6조에 준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

2019. 05. 18. 개정

2019. 08. 16. 개정